
흑산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신기술 활용 심의 공법 설명자료

[침수방지 방호벽]

2026. 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Contents

1. 사 업 개 요	1
1.1 사업명	1
1.2 사업 기간	1
1.3 사업 목적	1
1.4 발주처/설계사	1
1.5 사업 개요	1
2. 신기술 활용심의 자료	2
2.1 신기술 활용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2.2 신기술 활용개요	8
3. 신기술 활용 심의 참여방법	15
3.1 참가자격요건	15
3.2 참여방법	15
3.3 향후계획	15
4. 특정공법(신기술·특허)자료 작성방법	16
4.1 견적조건	16
4.2 유의사항	16
5. 특정공법(신기술·특허) 제출서식(업체 작성)	18
5.1 공법개요	18
5.2 관련도면	19
5.3 시방서(요약)	19
5.4 기존 유사기술, 자재와의 차별성	19
5.5 특허·신기술 등록원부	19
5.6 특허증	19
5.7 기타 제출양식	19
서식1 신기술 활용 심의 참여 확인서	20
서식2 특정공법(신기술·특허) 제안서	21
서식3 시공실적(최근5년)	22
서식4 신기술 활용 심의 가격견적서	23
서식5 공사비 산출근거	24
서식6 수량 및 단가 검증 확인서	25
서식7 심의위원 기피신청서	26
서식8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27
서식9 신기술 활용심의 설명자료(PPT양식)	28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흑산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사업 기간

2025년 05월 ~ 2027년 05월(착수 후 24개월)

1.3

사업 목적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풍해일에 대비하여 흑산도항 배후도시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에 따른 흑산도항 내 재해방지시설(방호벽) 설치

1.4

발주처/설계사

발주처	설계사	
	설 계 분 야	측량분야 및 지반분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주)한국종합기술	(주)선영엔지니어링

1.5

사업 개요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항 일원
사업규모	• 투명방호벽 : 210m, 승하강식방호벽(유압식) : 530m, 방재언덕 : 331m • 소형선부두 : 1식
총공사비	• 45,027 백만원
신기술 활용심의대상	• 재해방지시설 투명방호벽 1식 • 재해방지시설 승하강식방호벽(유압식) 1식
시행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1항 5호 •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 :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 07. 해양수산부)

2

신기술 활용심의 자료

2.1 신기술 활용 지역 및 시설물 현황

가. 사업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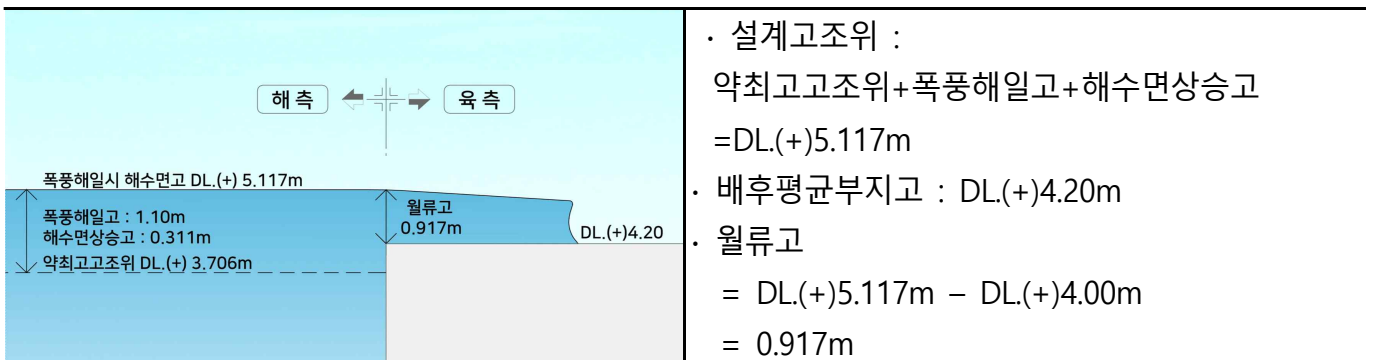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항 일원

사업 위치도



나. 침수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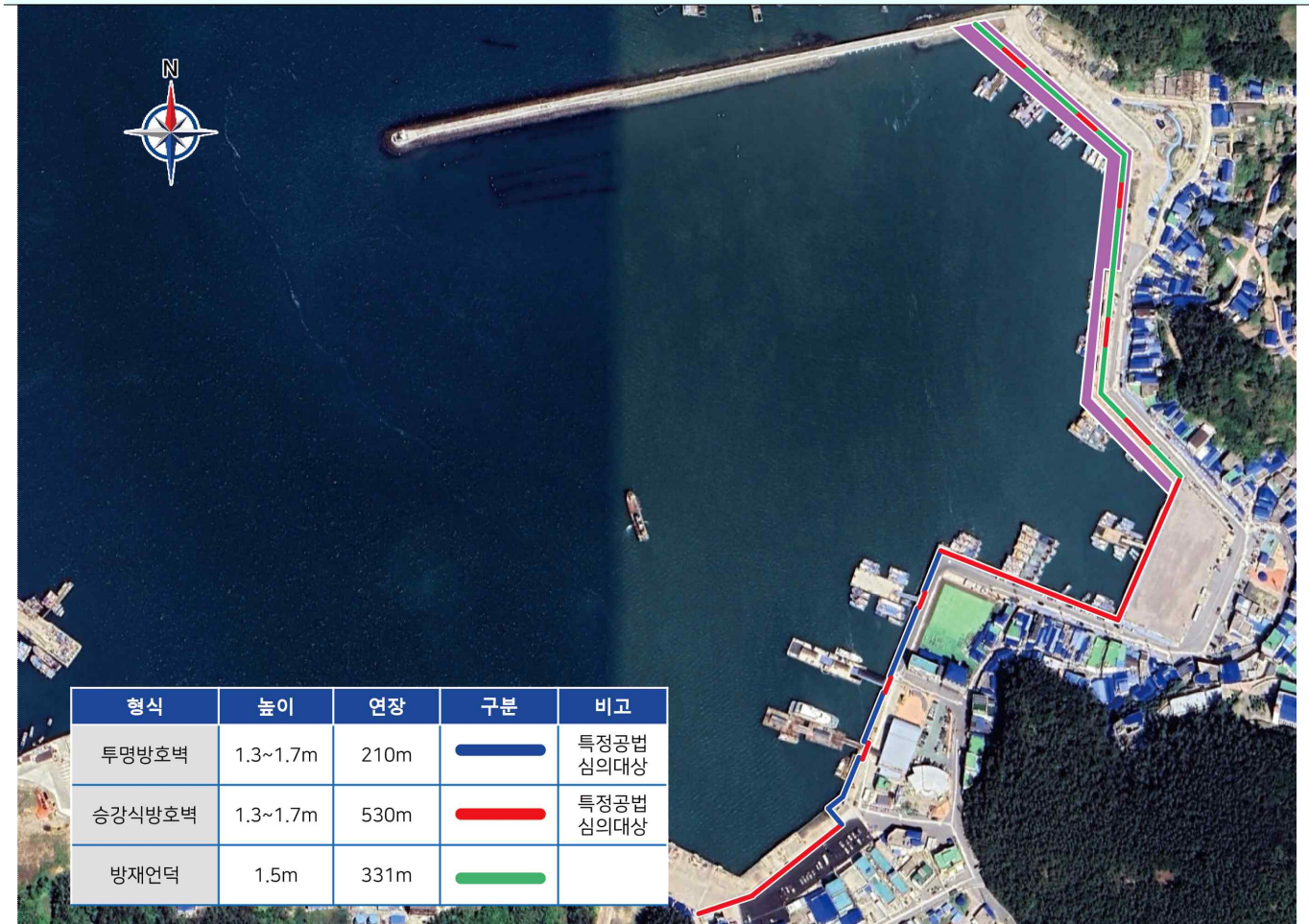
- 100년 빈도 폭풍해일고 및 해수면상승고를 고려한 월류고 산정으로 흑산도항의 침수구역 검토
- 설계고조위 DL(+).5.117m, 배후평균부지고 DL(+).4.20m로 월류고를 산정하였으며, 침수면적은 약 0.13km²으로 검토됨



다. 사업 계획평면도 및 현장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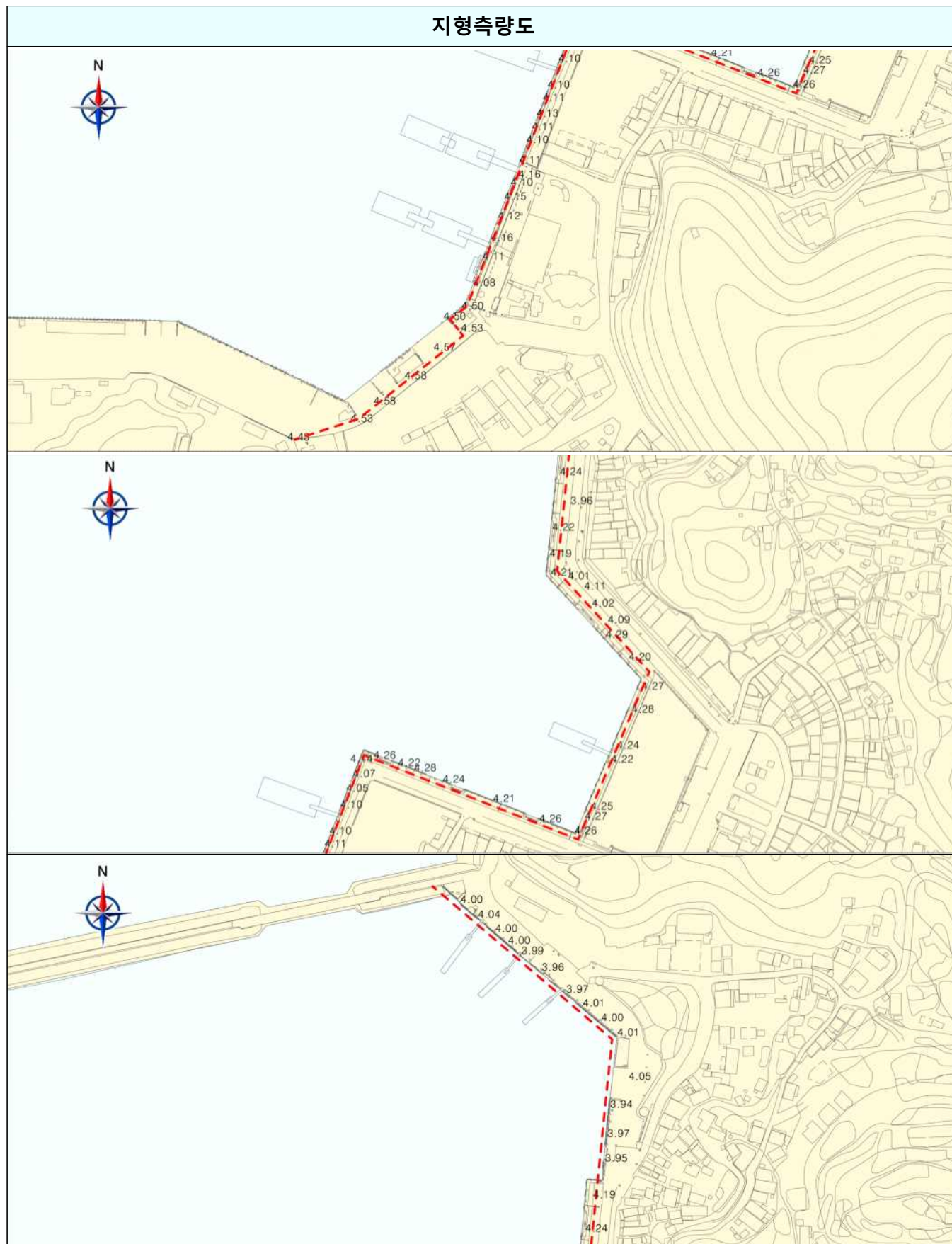
- 안전난간, 볼라드, 차양막 등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지형 레벨은 DL(+) 4.10~4.50m임
- 배후지에는 여객터미널, 식당 및 민가 등이 위치하고 있음

사업 계획평면도



라. 지형측량

지형측량 결과 방호벽이 설치되는 구간의 표고는 DL(+)-4.00~4.60m로 조사됨



마. 지반조사

- 방호벽 설치 구간에 대해서 지반조사 육상 8공 조사완료



바. 설계기준

1) 설계조위

조 위	흑산도항 조위(cm)	해 상 (단위 : cm)
약최고고조위(Approx. H.H.W)	DL(+) 370.6	400 370.6 Approx H. H. W
대조평균고조위(H.W.O.S.T)	DL(+) 327.5	350 327.5 H. W. O. S. T
평균고조위(H.W.O.M.T)	DL(+) 291.5	300 291.5 H. W. O. M. T
소조평균고조위(H.W.O.N.T)	DL(+) 255.5	250 255.5 H. W. O. N. T
평균해면(M.S.L)	DL(+) 185.3	200 185.3 M. S. L
소조평균저조위(L.W.O.N.T)	DL(+) 115.1	150 115.1 L. W. O. N. T
평균저조위(L.W.O.M.T)	DL(+) 79.1	100 79.1 L. W. O. M. T
대조평균저조위(L.W.O.S.T)	DL(+) 43.1	50 43.1 L. W. O. S. T
약최저저조위(Approx. L.L.W)	DL(±) 0.0	0 0.0 Approx L. L. W

대조차 284.4

평균조저 212.4

소조차 140.4

2) 마루높이

마루높이는 설계고조위¹⁾ + 여유고²⁾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구 분	설계고조위	여유고	마루높이
Type-A (투명방호벽)	DL.(+) 5.117m	0.683m	DL.(+) 5.80m
Type-B (승하강식방호벽_유압식)		0.383~0.683m	DL.(+) 5.50~5.80m

주 1) : 설계고조위는 약최고고조위 + 폭풍해일고 + 해수면 상승고를 고려한 값임

2) : 여유고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한 방법과 허용월파량에 의한 방법을 고려한 값임

3) 풍속

평균풍속은 5.0m/s, 최대풍속은 47.4m/s, 순간최대 풍속은 58.3m/s 로 나타남

구 분	평균풍속	최대풍속	순간최대 풍속
풍 속	5.0m/s	47.4m/s	58.3m/s
풍 향	-	S	S

4) 설계파고에 따른 방호벽에 작용하는 파압

최대파압은 "월파방지 방호벽 설계 및 평가방안 수립 용역 자료(해양수산부, 2025.03)" 분석 결과 월파방지벽 이격거리에 따라 충격쇄파압으로 인하여 Goda식 대비 4~6배 증가됨

본 과업의 방호벽 설치 위치가 법선에서 5~20m 내에 설치되므로 이격거리를 고려한 파압 적용

구 분	이격거리	파고	주기	파압분포도
투명식 방호벽	H=1.3m	1.10m	3.30s	$P_4=84.91 \text{ kN/m}^2$ $P_1=110.32 \text{ kN/m}^2$ $P_6=104.84 \text{ kN/m}^2$ DL.(+)5.80 DL.(+)5.117 DL.(+)4.50 $hc=0.68$ $\eta^*=2.97\text{m}$
	H=1.7m	1.10m	3.30s	$P_4=84.91 \text{ kN/m}^2$ $P_1=110.32 \text{ kN/m}^2$ $P_6=101.27 \text{ kN/m}^2$ DL.(+)5.80 DL.(+)5.117 DL.(+)4.10 $hc=0.68$ $\eta^*=2.97\text{m}$

구 분		이격거리	파고	주기	파압분포도
승하강식 (유압식) 방호벽	H=1.0m	15m	1.10m	3.30s	$P_4 = 58.03 \text{ kN/m}^2$ $P_1 = 66.65 \text{ kN/m}^2$ $P_6 = 63.33 \text{ kN/m}^2$ $DL.(+)5.50$ $DL.(+)5.117$ $DL.(+)4.50$ $hc=0.38$ $\eta^* = 2.97\text{m}$
	H=1.3m	3m	1.10m	3.30s	$P_4 = 84.91 \text{ kN/m}^2$ $P_1 = 110.32 \text{ kN/m}^2$ $P_6 = 104.84 \text{ kN/m}^2$ $DL.(+)5.80$ $DL.(+)5.117$ $DL.(+)4.50$ $hc=0.68$ $\eta^* = 2.97\text{m}$
	H=1.5m	3m	1.10m	3.30s	$P_4 = 84.91 \text{ kN/m}^2$ $P_1 = 110.32 \text{ kN/m}^2$ $P_6 = 103.00 \text{ kN/m}^2$ $DL.(+)5.80$ $DL.(+)5.117$ $DL.(+)4.30$ $hc=0.68$ $\eta^* = 2.97\text{m}$
	H=1.7m	3m	1.10m	3.30s	$P_4 = 84.91 \text{ kN/m}^2$ $P_1 = 110.32 \text{ kN/m}^2$ $P_6 = 101.27 \text{ kN/m}^2$ $DL.(+)5.80$ $DL.(+)5.117$ $DL.(+)4.10$ $hc=0.68$ $\eta^* = 2.97\text{m}$

5) 상재하중

구 분	물양장, 차량미통행 구간	차량통행 구간
상 재 하 중	5 KN/m ²	DB-24

※ 자료: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해설, p292(해양수산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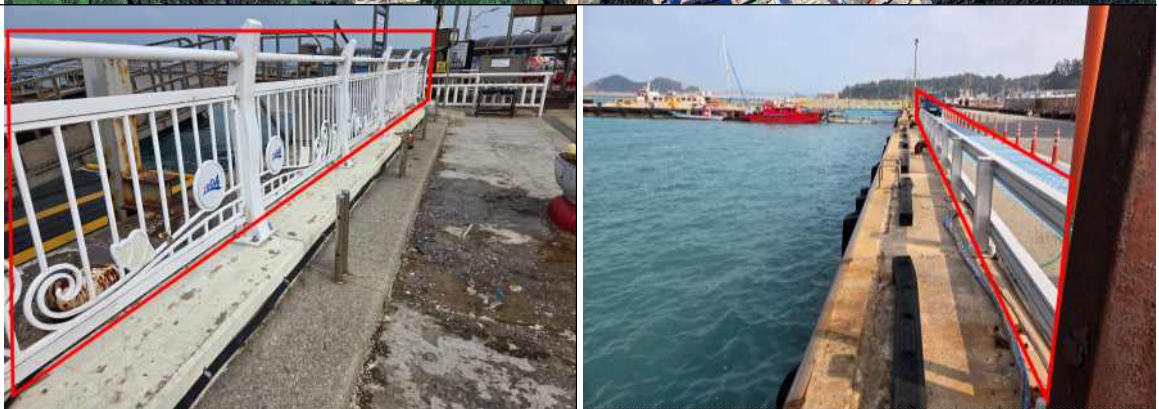
가. 신기술 활용 정의

- “신기술 활용”이란 실증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활용하는 것을 말함.
- “신기술 등”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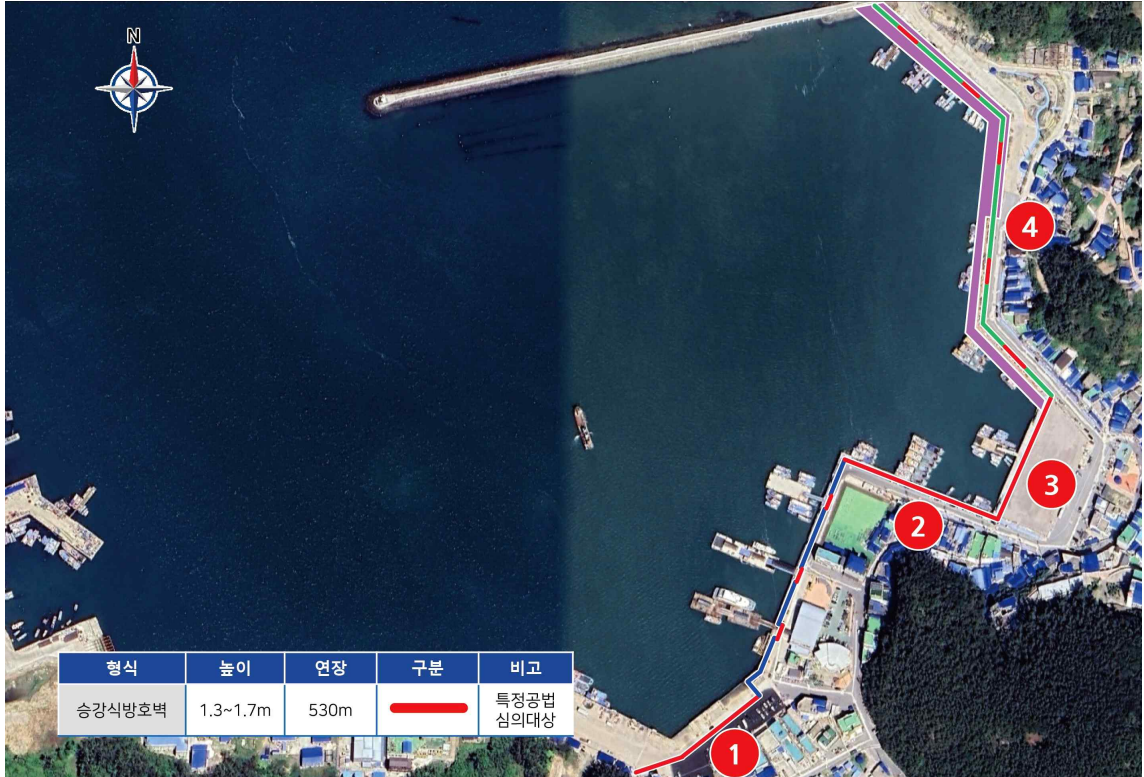
나. 신기술 활용 적용 사유

1) 침수방지 방호벽

- 시공여건 (Type-A 투명방호벽)

구 분	방호벽 설치구간 현황(Type-A 투명방호벽)													
시설 현황														
	<table><tr><th>형식</th><th>높이</th><th>연장</th><th>구분</th><th>비고</th></tr><tr><td>투명방호벽</td><td>1.3~1.7m</td><td>210m</td><td></td><td>특정공법 심의대상</td></tr></table>	형식	높이	연장	구분	비고	투명방호벽	1.3~1.7m	210m		특정공법 심의대상			
형식	높이	연장	구분	비고										
투명방호벽	1.3~1.7m	210m		특정공법 심의대상										
육상여건 및 작업공간														
	• 방호벽 설치구간의 육상레벨은 D.L.(+)4.10m ~ D.L.(+)4.50m로 조사됨 • 배후에 도로가 위치하여 육상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지장물이 다수 존재함 • 여객부두가 위치한 ①구간은 기설치된 웬스로 인하여 물양장 기능이 상실되었고, 현재 물양장으로 이용되는 ②구간 또한 자체 하역기능 없이 전면 부잔교를 통해서만 양육 및 휴식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 이용 현황 및 배후도로 폭 협소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투명방호벽을 적용하고 이용자의 통행이 필수적인 도교 위치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승하강식 방호벽이 필요													

시공여건 (Type-B 승하강식방호벽_유압식)

구 분		방호벽 설치구간 현황(Type-B 승하강식방호벽_유압식)											
시설 현황	 <table data-bbox="376 956 895 1037"><tr><th>형식</th><th>높이</th><th>연장</th><th>구분</th><th>비고</th></tr><tr><td>승강식방호벽</td><td>1.3~1.7m</td><td>530m</td><td></td><td>특정공법 심의대상</td></tr></table>			형식	높이	연장	구분	비고	승강식방호벽	1.3~1.7m	530m		특정공법 심의대상
	형식	높이	연장	구분	비고								
승강식방호벽	1.3~1.7m	530m		특정공법 심의대상									
 													
육상 여건	• 방호벽 설치구간의 육상레벨은 D.L.(+)4.10m ~ D.L.(+)4.50m로 조사됨 • 차도선부두 및 물양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어구, 전신주, 경계석, 계선주, 난간 등 지장물이 다수 존재함 • ①구간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승하강식 방호벽 적용이 필요 • ②~③구간은 물양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 및 인도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승하강식 방호벽 적용이 필요 • ④구간은 제4차 연안항 기본계획에 따라 물양장 확장 후 방재언덕을 설치할 계획이며, 방재언덕 축조 시 기존 물양장과 확장부지 사이에 단차가 발생하여 어업활동성 및 통행성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에 한하여 승하강식 방호벽 적용이 필요												

신기술 적용 필요성 및 사유

콘크리트 방호벽 적용시 문제점	
방호벽 설치 전 	방호벽 설치 후 경관성 저해 물양장 기능 상실 양생기간 소요 시공성 저하 
특정공법	
(투명방호벽)	(승하강식(유압식)방호벽)
	
▶ 안 전 성 : 상부콘크리트 추가 중량에 대한 기존 호안 등 단면 안정성(침하, 활동) 우려 ▶ 환 경 성 : 현장타설시 콘크리트 유출로 해양 등 오염이 우려됨 ▶ 경 제 성 : 상부하중에 의한 지반 침하시 지반개량 및 보수 공사비 발생 ▶ 품질관리성 : 현장타설에 따른 구조물 품질 신뢰성 확보 우려(양생관리 필요)	
신기술 적용 사유	• 이용성 : 방호벽이 설치되는 대부분의 구간이 물양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 시 육·해상 단절로 인한 하역작업 불가 등 물양장 본연의 기능 상실 • 경관성 : 방호벽 설치 배후지에는 민가와 횃집 등 상가가 존재하여 콘크리트 방호벽 적용시 경관성 미확보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상기와 같이 이용성 및 경관성 측면을 고려하여 과업대상지의 침수방지 대책으로 특정공법 적용이 필요함

공법 비교표

구 분	일반공법 (콘크리트방호벽)	특정공법 Type-A (투명방호벽)	특정공법 Type-B (승하강식방호벽_유압식)
단면 모식도			
시공성	• 현장 공간 협소로 시공성 저하 • 콘크리트 양생 등으로 공사기간 증가	• 구조물 기초 거푸집 일부 필요 • 공장제품으로 인한 시공속도 빠름	• 설치공간이 적으나 별도의 제어시설 필요 • 공장제작으로 인한 시공속도 빠름
유지관리	• 상부하중에 의한 구조물 침하 및 콘크리트 균열에 따른 유지보수 필요	• 경량제품으로 파손시 파손구간만 교체가능	• 모듈화된 구동장치 및 패널의 부분교체 가능
안정성	• 콘크리트 양생시 해수 유입 우려 • 품질관리 필요	• 고강도 제품으로 염해에 저항력 우수 • 공작제작으로 품질관리 용이	• 높은 내부식성으로 염해에 저항력 우수 • 사전점검 및 작동상태 확인 가능
경제성	• 상부 추가 하중에 의한 호안 등 구조물의 침하 시 지반처리 공사비 발생	• 경량으로 별도의 지반개량 불필요	• 전기사용료 및 시설물 점검 등의 유지관리비 발생
경관성	• 불투명 구조물로 경관성 미확보로 민원발생 우려	• 투명 구조물로 경관성 확보로 민원발생 차단 및 공기지연 방지	• 평상시 가동벽체가 지중에 매립되어 경관성 확보가 가능하고 차량통행이 가능

다. 신기술 활용 대상 시설물 현황

신기술 활용 대상 시설물(Type-A 투명방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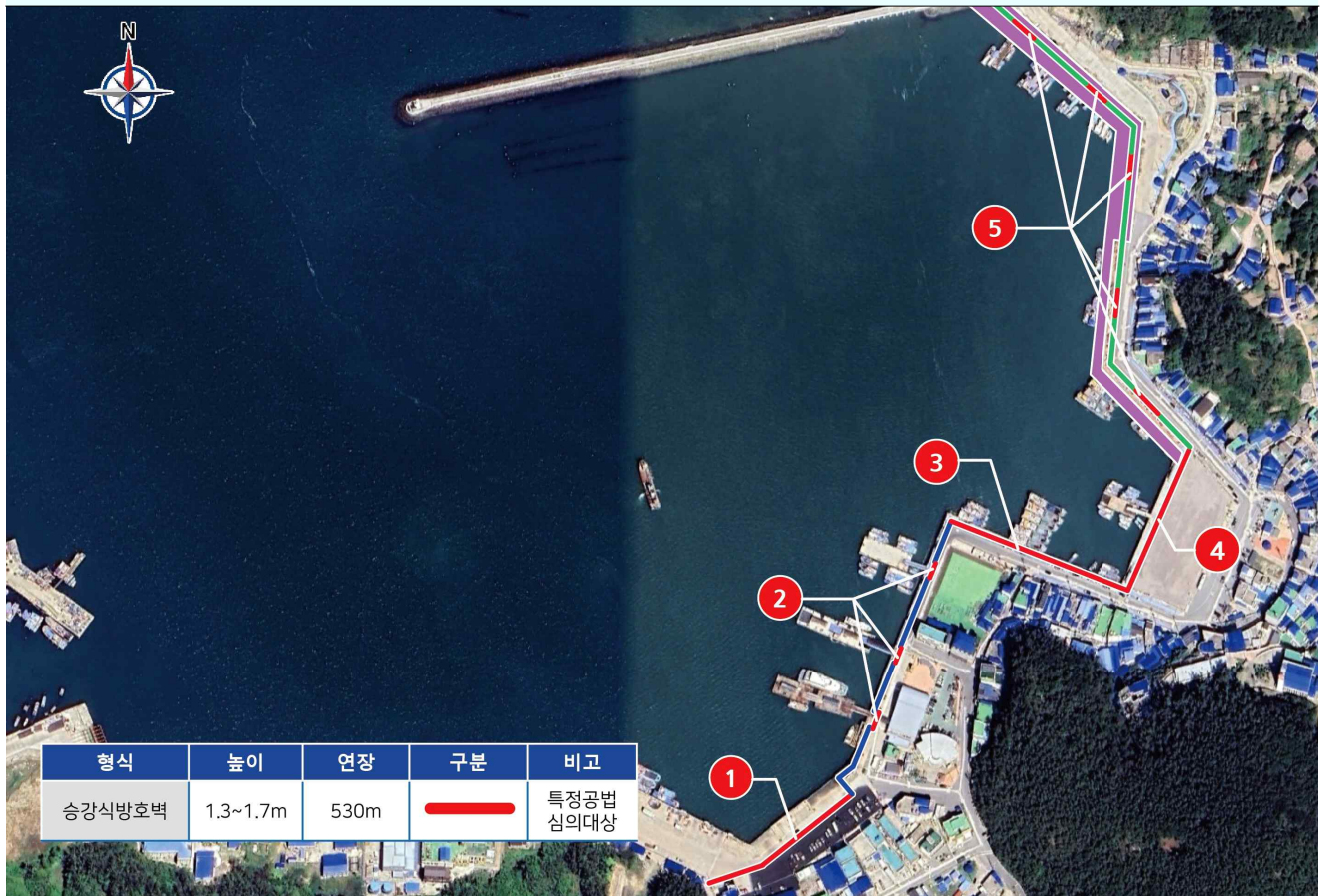


구분		높이	수량	비 고
TYPE-A (투명방호벽)	①	1.3m	30m	
	②	1.7m	180m	
소 계			210m	투명방호벽 : 210m

※ 실시설계시 현장 여건 및 발주처 방침, 각종 심사의견에 따라 물량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기술 활용 대상 시설물(Type-B 승하강식방호벽_유압식)

Type-B (승하강식방호벽_유압식)



구분		높이	수량	비 고
TYPE-B (승하강식방호벽) (유압식)	①	1.3m	131m	
	②	1.7m	30m	
	③	1.5m	150m	
	④	1.6m	119m	
	⑤	1.0m	100m	
소 계			530m	승하강식방호벽(유압식) : 530m

※ 실시설계시 현장 여건 및 발주처 방침, 각종 심사의견에 따라 물량변동이 있을 수 있음

라. 설계조건

제안대상 공사 범위

- 방호벽 제작 및 운반, 설치를 포함한 모든 시공에 필요한 행위
- 상부구조 형식은 지반 침하를 고려하여 단면 중량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시공조건

- 도서지역으로 공사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한 시공방법 제시 필요
- 공사시 기존 도로 점유 및 시공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공 방안 필요
- 현장 작업 여건상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지장물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함

구조계산

- 과업대상 방호벽의 구조계산은 "최신설계기준" 적용
- 관련시방규정 및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적용 하중에 대하여 단면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용성 관련규정을 만족하여야 함.
 - 적용하중: 파압, 풍압 등
- 설계시 부재 안전율을 확보한 단면으로 수량 산출
- 파압 작용 시 방호벽 자체 제품의 구조검토뿐만 아니라, 파압 등 외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토목 기초부 단면에 대한 구조검토 및 기초부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함(선정 업체에 한함)
 - 활동 : 1.2 이상, 전도 : 1.2 이상(과도한 단면에 의한 부재 안전율 지양)
- 구조검토를 통해 단면 경간 간격을 최적화할 수 있음
- 구조계산서는 관련자격보유자(기술사 이상)의 확인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타

- 공사 현장은 흑산도항의 해상 구간으로 내염해성(STS316) 구조물로 부식 및 녹 발생 등이 없어 지자체 이관시 유지관리가 수월한 자재 및 공법 적용 필요

3

신기술 활용 심의 참여방법

3.1 참가자격요건

- ▶ 심의요청일 기준으로 신기술 보유자, 신기술 사용협약자(국토교통부고시 건설 신기술협약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협약자), 특허권자, 특허 전용 및 통상 실시권자이어야 함.
- ▶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분야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당해 공법의 물품 납품 및 시공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3.2 참여방법

가. 참여공법: '2.2 신기술 활용 개요' 참조

나. 참여방법

- ▶ “흑산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설계사로 참여의사 제출
 - 설계사: (주) 한국종합기술
 - 담당자: 양희석 부장
 - 연락처: 02-6411-6811
 - E-mail: spya@kecc.co.kr
- 참여의사 : 설계사 담당자와 유선 상의 후 서면으로 제출

다. 참여의사 제출시한

- ▶ 2026년 10월 30일 15:00까지

라. 자료 제출방법

- ▶ 담당자 E-mail을 통한 접수(마감시한 준수)

3.3 향후계획

- ▶ 2026. 10. 16 : 신기술 활용심의 공모
- ▶ 2026. 10. 30 : 신기술 활용심의 참여의사 확인
- ▶ 2026. 11. 09 : 설계사 기술검토 및 발주청 보고(심의요청)
- ▶ 2026. 11. 23 :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 ▶ 2026. 12. : 설계 반영 및 신기술사용협약 절차 이행
- ▶ 2027. 02. : 설계VE
- ▶ 2027. 03. : 설계자문
- ▶ 2027. 05 : 용역준공. 끝.

4.1 견적조건

- 1) 견적금액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 금액으로 작성함.(설계가기준, 현장설치도)
 - ▶ 견적금액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세부내역서, 일체 자료 및 산출근거 포함. 1식에 의한 단가산출 표기는 불인정)
 - ▶ 레미콘과 철근은 관급자재로 견적서에 분리하여 명기
- 2) 견적금액 작성 시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의 가격(최근자료, 견적요청 해당 월 기재)중 최저가로 작성
 - ▶ 비고란에 레미콘과 철근 조달식별번호 기입
- 3) 2026년 하반기 적용기준(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기계경비, 노임단가, 조달청 공고 최신 원가계산 제경비율 등), 2026년 9월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적용
- 4) 직접공사비 세부 산출기준
 - ▶ 가격(공사비)은 신기술, 특허 부분에 대한 제작비와 운반비, 설치비를 포함하여 공종별로 산출.
- 5) 변동 공사비 산출기준
 - ▶ 업체가 제안한 가격이외에 주변여건을 고려한 추가비용 등을 산출한 금액으로 서식5를 참고하여 작성.

4.2 유의사항

- ▶ 제안공법(자재)의 재료(품질), 시공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 등의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공법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 제안공법(자재)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공법(자재)에 비해 우수해야 함.
- ▶ 공사비 산출근거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비가 일반공법 보다 현저하게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된 경우 사유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 공사비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견적내용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견적서를 개봉하여 일반공법에 비해 견적금액이 높은 제안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제안금액은 향후 설계VE, 설계자문 또는 조달청 단가검토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향후 설계.공사 과정에서 제안 참여업체의 귀책사유(제작 및 납품과정에서의 누락, 오기 등)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단, 발주청 귀책사유, 관계법령 및 기준 변경, 상위계획 변경, 물가 변동 등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

- 설계 반영 과정에서 공사 여건 변동에 따라 특정공법 적용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물량증감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청과 제안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선정된 공법의 제안자는 발주청에 구조계산서, 도면(상세도 포함),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시방서 등을 발주청의 일정에 맞추어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계약된 설계사의 검토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보완하여야 함. 또한, 자료 제출 및 보완 거부·지연 등으로 일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재심의 또는 차순위 선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중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업체는 심의에서 배제됨.
- 구조계산서 제출 후 오류, 구조적 불안정 등 문제점 확인 시 제안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손실은 제안자(업체)가 부담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허위 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인한 설계·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되고, 향후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공법·자재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 동일한 신기술, 특허에 대해서 권리자(신기술 개발자, 신기술사용협약자,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특허 통상실시권자 등) 중 1인만 공법 선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권리자간 권한 위임 사항 등에 따라 제안자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거나,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제안금액 작성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설계, 시공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음.
- 공법 제안은 투명방호벽, 승강식방호벽 중 1개의 공법만 제안할 수 있음
- 그 외 세부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운영회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참조

※ (참고) 가격 평가점수

- 소요예산 가격이 균형가격(EP) 이하는 30점

* 평점 = 30점 [소요예산가격 ≤ 균형가격]

- 균형가격(EP)을 기준으로 소요예산 가격이 증가시 감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평점 = 30점 - 감점

* 가격점수 감점 산정 기준(중간 값은 직선보간법으로 계산)

균형가격 이상 비율	감점
0%~20%까지	0점~20점
20%초과	20점

* 균형가격 : 평가대상업체별 소요예산가격의 평균가격

* 소요예산가격 : 같은 조건에서 공평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초로 추가비용 등을 가감한 가격(사업부서에서 확정)

5

특정공법(신기술·특허) 제출서식(업체 작성)

5.1

공법개요

구 분		000 공법	000 공법	000 공법	000 공법	000 공법	000 공법
신기술·특허 번호							
업체명							
공법 개요	형상						
	개요						
특징	시공성 (현장적용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경제성 (직접공사비)						
	시공실적 (최근5년)						

5.2 관련도면

5.3 시방서(요약)

5.4 기존 유사기술, 자재와의 차별성

5.5 특허·신기술 등록원부

5.6 특허증

5.7 기타 제출양식

서식1 신기술 활용 심의 참여 확인서

서식2 특정공법(신기술·특허) 제안서

서식3 시공실적(최근 5년)

서식4 신기술 활용 심의 가격 견적서(직접공사비, 천원단위)

서식5 변동공사비 산출근거

서식6 수량 및 단가 검증 확인서

서식7 심의위원 기피신청서

서식8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서식9 신기술 활용 심의자료(PPT양식)

※ 서식 6~9은 제출기한 이후 제출

신기술 활용 심의 참여 확인서

☐ 안 건 명 : 흑산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침수방지 방호벽) 신기술 활용 심의

구 분	심의대상 사업			공법명	참여여부 (O/X)
	시설명	수량			
침수방지 방호벽	Type-A	투명	1식		
	Type-B	승하강식 (유압식)	1식		

위와 같이 「흑산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신기술 활용심의에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특정공법(신기술·특허) 제안서

☐ 신기술·특정공법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소재지	본사	
	공장	
공법명		
시공실적	공공인정 실적	건수/ 백만원(최근 5년간)
	민간인정 실적	
신기술, 특허	번호	
	보유권자	
	취득일자	
	보호기간	~
신기술·특허의 실시권 여부		신기술 보유자(), 특허권자(), 전용(), 통상()
전용, 통상 실시권의 범위 (지역, 기간 등)		
제안자 (법인)	주 소	
	상 호	
	대표이사	

신기술 적용실적 (최근 5년간)

번 호	발 주 처	원도급사	공 사 명	시공규모	공 사 기 간	계약금액	비 고
					~		
					~		
					~		
					~		
					~		
					~		
					~		
					~		
					~		
					~		
					~		
					~		

붙 임 : 신기술 활용실적 증빙자료(실적확인서, 하도급 계약서, 자재납품 계약서 등)

※ 시공실적의 가간은 심의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으로 하며, 실적건수는 특허등록 또는 건설기술 인증을 득한 이후 해당공법이 적용된 실적으로 하며, 실적관리기관(협회 등) 및 발주청, 조달청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와 발주청 하도급 승인문서 등을 제출

신기술 활용 심의 가격견적서

- ☐ 공사명 : 흑산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 건 명 : 침수방지 방호벽
☐ 공법명(특허 또는 신기술 번호)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비고란에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신기술품셈 포함), 견적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안 건 명 : 침수방지 방호벽

▶ 투명방호벽 / 승하강식방호벽 (특허부분)

공 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00	m	식		원		
2. 000						
- 000		식				
- 000		식				
- 000		식				
3. 000						
- 000		m ³				
4. 000						
- 000		m ³				
- 000		m ³				
- 000		m ³				

수량 및 단가 검증 확인서

- ☐ 건 명 : 침수방지 방호벽
- ☐ 공법명(신기술 또는 특허 번호) :

흑산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의 000 안전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심의를 위하여 (주)한국종합기술과 000회사는 상기 공법의 수량 및 단가에 대한 상호 검증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신기술 등 활용 심의를 위한 수량 및 단가를 도면 및 구조계산, 시방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
2.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신기술품셈 포함) 등의 적용이 가능한 공종은 모두 적용하였으며, 부득이 적용이 곤란한 공종에 한하여 견적가를 적용하였음.
3. 동 공사는 물론 향후 해양수산부(소속기관, 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 등에 상기 공법을 반영(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을 준수하여 수량 및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음.

년 월 일

설계사

신기술 등 업체

(주)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인)

00사 대표이사

(인)

심의위원 기피신청서

- ☐ 안 건 명 : 흑산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침수방지 방호벽) 신기술 활용 심의
- ☐ 기피 대상자

소 속	성 명	근거 및 사유	비 고

상기 위원에 대하여 본 안건 심의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 근거서류 : 별첨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 안 건 명 : 흑산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침수방지 방호벽) 신기술 활용 심의

일자 (시간)	접촉자				심의 위원명	근거서류
	소속업체	소속부서	직위(직급)	이름		
						별첨 1

신기술 등 업체와 심의위원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도 첨부